

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| |
|-------|
| 의안번호 |
| 99-67 |

제안연월일 : 1999. 11.

제안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매각코자 하는 재산

-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1필지 374m²
- 예정가격이 1건당 1,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 1필지 7,469m²
- 경영치수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재산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3필지 22,391m²

2. 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, 천원)

| 구분 | 재산종별 | 재산소재지 | 지목 | 수량 | 예정금액 | 비고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소계 | 5필지 | | 30,234 | 1,681,904 | |
| 매각 | 토지 | 거창읍 송정리 997-2 | 답 | 374 | 1,668 | 수의계약 |
| | “ | 고제면 봉계리 산10 | 임야 | 7,469 | 911 | “ |
| | “ | 가조면 일부리 1237-38 | 하천 | 18,392 | 1,379,400 | 공개경쟁입찰 |
| | “ | 가조면 일부리 681 | 답 | 130 | 9,750 | “ |
| | “ | 가조면 석강리 1378-53 | 하천 | 3,869 | 290,175 | “ |

※ 위 예정금액은 감정 후 변동될 수 있음.

3. 근거 및 참고자료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제1항 : 공유재산 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: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신청
- 지방재정법시행령95조 :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(수의계약)
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(수의 계약)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: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신청서